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양 산 시 의 회 의 장

2026년 3월 20일

양산시의회규칙 제121호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폐기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 절차 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 주민청구조례안의 의원발의조례안 심사절차 준용 및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을 규정
- 상임위원회 심사시 대표자의 청구 취지 설명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 요청 규정
- 주민청구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시 대표자에게 알립 규정